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수신 관내 금지물질 수입업체 대표

(경유)

제목 금지물질 수입 승인(허가) 절차 일원화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2항제3호 신설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상 금지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동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의 수입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시행 이후 금지물질별 수입 요건

연번	근거법령	물질명	노동부 수입승인	기후부 수입허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필요	해당없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필요	해당없음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	백연 포함 페인트 (중량비율 2% 초과)	필요	해당없음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	벤젠 포함 고무폴 (중량비율 5% 초과)	필요	해당없음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 제5호	석면	필요	해당없음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 제6호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필요	해당없음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 제7호	황린 성냥	필요	해당없음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 제8호	연번 1·2·5 또는 6의 물질을 중량 비율 1% 초과로 포함한 혼합물	필요	해당없음
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 제9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불요	필요

나. 개정안 공포일('26.7.7) 이후 「화학물질관리법」 상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의 수입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해당물질을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끝.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



근로감독관

이종관

팀장

대결 2026. 7. 13. 산재예방감독과 전결
장래준 과장

협조자

시행 산재예방감독과-2523 (2026. 7. 13.) 접수

우 2638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2 3층, 산재예방감독과 / moel.go.kr/wonju

전화번호 033-769-0855 팩스번호 0503-8803-0391 / hypocry1205@korea.kr / 비공개(6,7)